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세무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범위 등 세무사항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실무교육 및 등록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합격자 결정방식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시험 제도 합리화

- 1) 공무원 경력 과목 면제자에 대한 합격인원 결정 방식 개선(안 제2조)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일반 응시자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

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함.

- 2) 공무원 경력 과목 면제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안 제8조 및 별표 4 신설)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의 합격 유불리가 제2차 시험 과목 간 난이도 편차에 따라 결정되지 않도록 해당 응시자에 대해서는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도의 합격선 점수에 따라 합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

- 1)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안 제14조의3 신설)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을 해당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 2)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안 제14조의4 신설)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를 조세에 관한 국가기관의 처분 등으로 정함.

- 3)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안 제14조의5 신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목적의 수임 범위를 국선대리 등으로 정함.

다.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 및 세무사 징계의결의 통보 및 공고(안 제14조

의12 및 제22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법인에 대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세무사에 대해 징계를 명한 경우 해당 내용을 소속협회 및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소속 협회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일정기간 동안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라.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안 제16조 및 제21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원 중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위원의 수를 2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함.

마.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실무교육(안 제33조의6 신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5. 20. ~ 6.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3항 중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를 “취득한 성적(제 1차 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의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하며, 영어시험의 성적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합격인원”을 “합격인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 단서”를 “제2항제2호”로, “최소합격인원”을 “최소 합격인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의 사람

④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매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별표 4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8까지를 각각 제14조의6부터 제14조의11까지로 하고,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4조의3제1항을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국세청의 경우 세무서장 소속의 지서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3.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

정지원, 시·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이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4조의3제1항을 적용한다.

4.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5. 「군사법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
6.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1.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2. 겸임발령 등으로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④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파견,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은 법 제14

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입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제14조의4(수입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1.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처분(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무 및 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사무
2.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 따른 처분(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무 및 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사무
3. 조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 사무
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나.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행정심판 관련 사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7조제8항·제18조제8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무

6.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행하는 질문·검사·조사
사무

제14조의5(수입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입의 범위) 법 제14
조의3제1항 단서에서 “공익목적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나 활동에 관련된 수입을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
2.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

제14조의3 앞에 “제2장의3 세무법인”을 삭제한다.

제14조의6 앞에 “제2장의3 세무법인”을 삽입한다.

제2장의3에 제1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2(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이하 이 조에서
“등록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그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등록취소등을 받은 세무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등록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3. 등록취소등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등록취소등의 종류가 업무정지
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의 정지기간을 포함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법 제16조의15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다.

1. 등록취소: 3년

2. 1년 이내의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제16조제1항 중 “10명”을 “1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2명”을 “10명”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

2.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3. 제16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에 대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징계를 받은 세무사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
2.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소속된 법인·사무소 등의 명칭 및 주소
3. 징계의 내용 및 사유
4. 징계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징계의 종류가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직무정지의 정지기간을 포함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통보받은 소속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 받은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다.

1. 등록취소: 3년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직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제33조의5 후단 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다.

제3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6(변호사의 실무교육) 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실무교육

(이하 “변호사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다.

② 변호사 실무교육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변호사 실무교육의 횟수·시기·내용 등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변호사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대한변
호사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 실무교육 종료 후 지체 없이 변호사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제2항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14
조의4 및 제1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사 징계 의결의 통보 및 공고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4]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의 합격점수(제8조제4항 관련)

1. 제8조제2항에 따라 합격이 결정된 사람 중 최종 순위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60점
2. 제8조제2항에 따라 합격이 결정된 사람 중 최종 순위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text{최종 순위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times \frac{\text{제2차 시험 중 4과목 응시자의 회계학 1·2부 과목 평균점수}}{\text{제2차 시험 중 4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합격점수 및 각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u>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u>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취득한 성적(제 1차 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의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하며, 영어 시험의 성적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u>
④ (생략) ⑤ <u>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세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

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
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제8조(합격자 결정) ① (생략)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
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
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 합격인원(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일
부 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은 포
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합격자 결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2차 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
정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2항
에 따라 제2차 시험의 일부 과
목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
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
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
0점 이상인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
상인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점
수가 높은 순서의 사람

③ 제2항제2호-----

결정할 때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신 설>

<신 설>

----- 최소합격인원-----

-----.

-----.

④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매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별표 4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4조의3제1항을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국세청의 경우 세무서장 소속의 지서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3.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이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4조의3제1항을 적용한다.

4.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

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5. 「군사법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

6.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임 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1.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2. 겸임발령 등으로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신 설>

④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
까지 파견,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
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을 적
용할 때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제14조의4(수임제한 등이 적용되
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
에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
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1.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국
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처
분(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해당하는 사무 및 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사무

2.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지
방세기본법」 제89조에 따른
처분(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무
및 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

<신 설>

련된 사무

3. 조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 사무

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나.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행정심판 관련 사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7조제8항·제18조제8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무

6.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행하는 질문·검사·조사 사무

제14조의5(수입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입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서

<u>제2장의3 세무법인</u> <u><신 설></u> <u>제14조의3 ~ 제14조의8 (생 략)</u> <u><신 설></u>	<u>“공익목적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활동에 관련된 수입을 말한다.</u> <u>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u> <u>2.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u> <u>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u> <u><삭 제></u> <u>제2장의3 세무법인</u> <u>제14조의6 ~ 제14조의11 (현행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8까지와 같음)</u> <u>제14조의12(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이하 이 조에서 “등록취소 등”이라 한다)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u>
--	--

1. 등록취소등을 받은 세무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등록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3. 등록취소등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등록취소등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업
무정지의 정지기간을 포함하
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
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법 제16조의
15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
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
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
당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
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다.

1. 등록취소: 3년

2. 1년 이내의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 6. (생략)

7.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④ (생략)

제21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

② (생략)

<신설>

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 18명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

-- 10명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

2.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3. 제16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징계 의결의 통보 및 공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세무사, 국세청장 및 그 소속협회장과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징계 의결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

제22조(징계 의결의 통보 및 공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에 대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징계를 받은 세무사의 성명
· 생년월일 · 등록번호
2.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소속된 법인 · 사무소 등의 명칭 및 주소
3. 징계의 내용 및 사유
4. 징계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징계의 종류가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직무정지의 정지기간을 포함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세무

제33조의5(세무대리업무등록 등)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로,	<u>사에 대한 징계를 통보받은 소속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 받은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다.</u> <u>1. 등록취소: 3년</u> <u>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직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u> <u>3. 과태료: 6개월</u> <u>4. 견책: 3개월</u> 제33조의5(세무대리업무등록 등) ----- ----- ----- ----- ----- ----- ----- ----- ----- -----
---	---

“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
무등록증”으로, “세무사”는 “공
인회계사”로 본다.

<신 설>

----- “공
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

제33조의6(변호사의 실무교육) 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실무
교육(이하 “변호사 실무교육”이
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다.

② 변호사 실무교육의 기간은 1
개월로 한다.

③ 변호사 실무교육의 횟수·시
기·내용 등은 대한변호사협회
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
어 정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
사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및 대한변호사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
다.

⑤ 변호사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
사 실무교육 종료 후 지체 없이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u>별표 4</u>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③ (생략)	<u>변호사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별표 5</u>----- -----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2